

기간제교원임용규정

(규정명 변경: 2012.07.22., 2023.06.01.)

2000.04.01.제정	2001.04.01.일부개정	2002.03.25.일부개정	2007.06.26.일부개정
2010.10.01.일부개정	2010.10.01.일부개정	2011.02.01.일부개정	2011.04.20.일부개정
2012.07.22.일부개정	2014.06.24.일부개정	<u>2023.06.01.일부개정</u>	

<교무팀>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정관(이하 “정관”이라한다.) 제37조 제2항과 동명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4항에 정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인 기간제교원의 임용, 평가, 근무조건 및 보수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2., 2014.6.24., 2023.06.01.)

제2조(자격 및 의무) 본 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본 대학교에서 해당 학문분야의 강의 및 연구 활동의 의무를 다하고 학사업무를 위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제3조(임용절차) 기간제교원의 임용은 정관 제37조 2항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1.4.20, 2012.7.22., 2023.06.01.)

제3조의2(임용원칙) ① 기간제교원의 임용시 특정대학 출신자가 학부 및 학과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2.7.22, 2023.06.01.)

②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채용의 경우 학과교원의 과반수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제4조(임용조건) ① 2010년 이전에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한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제5조의 기준에 의거하여 재임용한다. (개정 2010.10.1, 2011.2.1, 2012.7.22., 2023.06.01.)

② 삭제 (2012.7.22.)

③ 기간제교원의 보수는 교원인사규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연봉제로 하며, 연봉금액은 재임용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세부내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0.1, 2011.2.1, 2012.7.22., 2023.06.01.)

④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임용조건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1.2.1.)

제4조의2(승진) ① 기간제교원의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2., 2023.06.01.)

가. 기간제교원 임용 후 6년 이상 재직자

나. 최근 6년간 교육업적 연간 평균 51점 이상(단, 학부교양대학 소속 교원은 45점 이상)

다. 최근 6년간 연구업적 합산 105점 이상

② 기간제교원의 승진임용 평가는 교원업적평가, 학과지표 평가, 승진임용심사위원회평가, 총장 평가로 하며, 평가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7.22., 2023.06.01.)

제5조(재임용) ① 기간제교원의 업적평가에 대하여는 교원업적평가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06.01.)

② 기간제교원의 재임용은 교원업적평가 규정상의 교육업적 및 연구업적 평가요소 전체에 대하여 평가하며, 재임용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10.10.1., 2012.7.22., 2023.06.01.)

1. 교육업적 : 연간 평균 44점 (개정 2012.7.22., 2023.06.01.)

2. 연구업적 : 평가기간 내 30점 (개정 2012.7.22., 2023.06.01.)

(전문학술지(작품발표 포함) 주저자 또는 국제저명학술지로 15점 필수)

3. 봉사업적 및 교육+봉사업적의 연간 최소요건은 적용 면제

③ 본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 교원인사규정 등의 개정으로 전임교원에게 적용되는 업적평가 기준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재임용 기준은 그에 연동하여 변동한다.(개정2010.10.1.)

④ 대학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재임용 의사가 있는 교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면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10.10.1.)

⑤ 대학은 재임용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0.10.1.)

⑥ 대학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제6조 (삭제 2010.10.1.)

제 7조(수업 및 초과강의료 지급) ①수업관련 의무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0.10.1.)

②초과시수에 대한 초과강의료는 본 대학교 전임교원에 준한다.

③(삭제 2010.10.1.)

제8조(복무기타) ① 기간제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본대학교 전임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0.1., 2012.7.22., 2023.06.01.)

② 사학연금, 건강보험 등의 관련법에 의하여 가입된 사회보험료 개인부담금 및 각종 세금은 월 급여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0.1.)

제 9 조 (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학교법인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본 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본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 강의전담 전임교원 임용 규정은 폐지하고, 종전 규정에 의해 임용된 자는 본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본 규정 제4조의 2 재임용 요건에 대하여는 본 규정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본교에 재직하는 모든 전임강사(기간제)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재임용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본 개정 규정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전임강사(기간제) 교원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보며, 2010년 3월 1일자 신규임용 및 재임용된 교원의 차기 재임용일은 2012년 3월 1일로 하고, 2010년 9월 1일 재임용된 교원의 차기 재임용일은 2012년 9월 1일로 한다.
- ③(재임용 업적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3월 1일자 신규임용 및 재임용 교원의 재임용시 업적 기준은 2012년 3월 1일자 재임용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업적 구분		재임용 점수		
		2010년	2011년	비고
교육		30점	제5조 제2항 제1호 적용	2개년 점수 합산
연구	연구 전체	제5조 제2항 제2호 적용		
	전문학술지A급(작품발표 포함) 주저자 또는 국제저명학술지기준	임용기간 내 7.5점		

부 칙

①(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후단의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는 정관 제37조 제2항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의 개정 시행일에 따라 2012년 5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